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2756
----------	------

2025년 6월 16일
보건복지위원회

1. 제안경위

- 가. 제 안 자 : 홍국표 의원(찬성자 21명)
- 나. 제 출 일 : 2025년 5월 26일
- 다. 회 부 일 : 2025년 5월 27일

2. 제안이유

-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유공자를 포함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서울시의 조례는 국가보훈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에 대해 각각의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생계곤란 및 무연고 유공자 장례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에서 유공자를 포함한 '무연고 사망자 장례서비스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2024년 2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시장은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기 전에 무연고 사망자가 국가유

공자인지 여부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사 예우를 받도록 조치하고 있음.

- 이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영장례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저소득층 생계곤란 및 무연고 사망자의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자에게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사 예우를 제공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동 조례 제3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함.

나. 동 조례 제3조 제4항에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가 국가유공자'인지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해당할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과 함께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사 예우를 받도록 함.

4. 추진근거

- 국가보훈 기본법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II. 검토 의견 (수석전문위원 임영미)

1 개정안의 개요

- 개정안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무연고 시신 등 처리 절차에 우선하여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고, 국가유공자인 경우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사 예우를 받도록 조치함으로써 국가 유공자에 대한 존경과 예우를 다하려는 것임(안 제3조 제4항 신설 등).
- 같은 개정안이 328회, 330회 임시회에 발의되어 계류된바 있음.

〈표〉 신·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③ (생략) <u><신설></u>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시장은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지 여부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지방보훈지청을 포함한다)과 함께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u>④</u> (생략)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

- 과거 무연고 시신 등 처리 절차에 있어 국가유공자 여부 확인 및 예우를 규정하지 않고 있었고, 보건복지부 「장사업무 안내」에서 지방보훈(지)청 문의 및 장사 예우 조치를 규정하고 있었으나, 국가유공자 확인 소홀로 사망 당시 국립묘지 안장심사를 받지 못한 국가유공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됨에 따라,
- 2024년 2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3항에 신설되어 무연고 시신 등 처리 절차에 있어 우선적으로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는 의무를 규정하게 되었음.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무연고 시신 등의 처리)

③ 시장등은 제1항 따라 무연고 시신(無緣故 屍身) 등을 처리하기 전에 무연고 사망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이하 “국가유공자등”이라 한다)인지 여부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하여 확인하고, 국가유공자등인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지방보훈지청을 포함한다)과 함께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4.2.6.>

- 관련하여 2024.7.30.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되며, 무연고 사망자의 장례를 지원하기 전에 국가유공자등 여부를 확인하고, 국가유공자등에 해당 하는 경우 사망한 국가유공자의 주소지 관할 지방보훈(지)청에 통보하여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모법이 개정(2024.2.6. 공포, 2024.8.7. 시행) 됨에 따라 국가유공자등의 범위를 상세히 정함.
- 개정된 시행령에는 국가유공자등의 범위를, 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와 ②특수임무유공자, ③5.18민주유공자, ④고엽제후유의증환자 중 수당지급대상자로 정하고 있음.

- 앞으로 무연고 사망자가 발생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행정정보 시스템을 통해 국가유공자등 해당 여부를 확인하고 국가유공자 등으로 확인되면 공문으로 지방보훈(지)청에 통보한 후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내용이 신설됨.
- 통보받은 지방보훈(지)청은 △대통령 명의 근조기 △국립묘지 안장 등을 지원하되, 해당 지자체가 공영장례를 치르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보훈부가 계약한 상조업체를 통해 △고인용품 △빈소용품 △인력 △운구차량 등을 지원함.

□ 서울시 공영장례 지원현황

(단위: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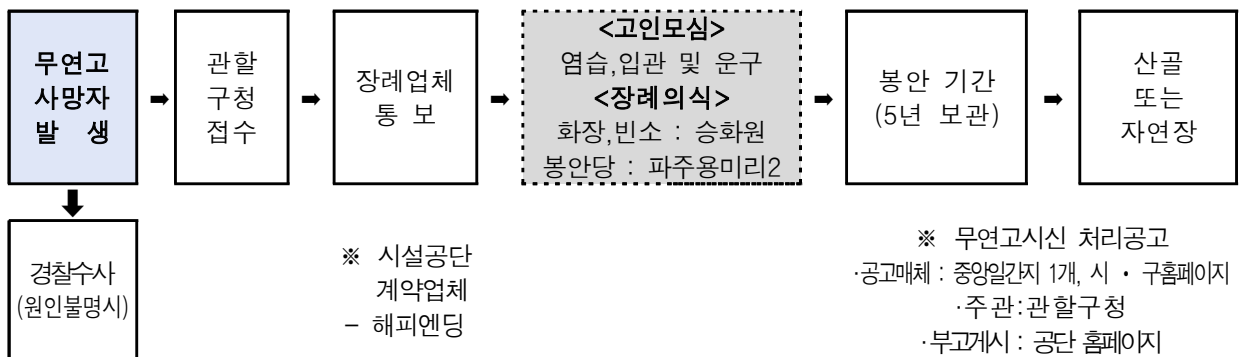
구 분		2022년	2023년	2024년
계		1,112	1,225	1,407
무연고	①일반 무연고	271	273	315
	② 저소득 무연고	831	945	1,077
저소득시민(연고자 있음)		10	7	15

- 현재 서울시의 공영장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무연고 사망자,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위임·기피한 사망자, 장제급여를 받는 자 중에서 연고자가 실질적으로 장례처리 능력이 없는 경우 등에 지원하고 있음.
- 2020년 이후 저소득 무연고 사망자는 증가하고 있음(2021년 600명→2024년 1,077명, 79.5% 상승). 또한 서울시에서는

경제적 이유로 시신 인수를 포기하지 않도록 저소득 취약계층의 장례도 확대하고 있어 공영장례가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임.

- 서울시시설공단에서 위탁 대행하며 서울시시설공단과 계약한 대행업체에서 공영장례 염습, 운구, 화장 후 산골·봉안 등의 장례의전을 수행하고 있으며, 공영장례 시 고인모심(입관 지원), 빈소마련 및 장례의식 지원, 장례식장 안치료(1일 70천원) 등의 서비스가 제공됨.

□ 공영장례 절차



□ 무연고 사망자(일반+저소득)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 내용

지원내용	수행방법(대행업체)
시신처리 (고인모심)	▶ (일반 무연고) 서울시시설공단 계약 장례 의전업체 사업 실시
	▶ (저소득 무연고) 장제급여 통해 장례식장 실시 ※ 장례식장 거부 시, 공단 계약 장례 의전업체에서 실시
장례서비스	▶ 장례 의전업체 + (사)나눔과나눔(서울시 업무협약기관) 공동수행 ▶ 승화원 전용 빈소에서 장례의식 수행

- 2024년 서울시에서 지원한 공영장례 1,407건 중 국가유공자로 확인된 지원은 18건으로 1.2%를 차지함.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서는 국가유공자 여부를 지방보훈청에 확인하도록 하고 있으나 조례에서는 시행령의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서울시의 실정에 맞게 행정정보시스템(서울행정시스템)을 통해 확인하도록 하고 있어 개정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됨.

※ 집행부 의견 : 원안가결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은 시장 등은 무연고 사망자가 국가유공자인지 여부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지방보훈청과 함께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이를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에 반영하여 저소득층 생계곤란 및 무연고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사 예우 제공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3 종합 의견

- 본 조례안은 법령상의 개정 내용을 반영하는 것으로 서울시가 무연고 시신 처리 시 국가유공자 여부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확인하여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강화하기 위해 이미 시행하고 있는 방법과 관련 사항 및 절차를 명시하는 것으로 적절한

것으로 판단됨.

- 또한 추경을 통해 국가유공자 장례서비스 예우 강화를 위한 예산 3 억원이 신규 책정되어 국가를 위해 희생 공헌한 국가유공자 장례식장에 서울시장 근조기, 에스코트 등 장례서비스가 지원될 예정임.
- 다만 지난 회기(328회 임시회, 330회 임시회)에 동일한 안건이 계류되어 조례안의 개정이 적합한지 숙고할 필요가 있음.

전 문 위 원 김소은	02-2180-8144
입법조사관 김진영	02-2180-8140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홍국표 의원 발의)

의안 번호	2756
----------	------

발 의 년 월 일: 2025년 05월 26일

발 의 자: 홍국표 의원(1명)

찬 성 자: 김규남, 김용호, 김재진,
김지향, 김태수, 남궁역,
남창진, 문성호, 박춘선,
유만희, 유정희, 윤종복,
이성배, 이원형, 이종태,
이종환, 이효원, 임춘대,
최민규, 허 훈, 황철규
의원(21명)

1. 제안이유

- '국가보훈 기본법'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유공자를 포함한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독립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및 '서울특별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하고 있음.
- 그러나 서울시의 조례는 국가보훈자, 독립유공자, 참전유공자에 대해 각각의 지원사업에 대해 규정하고 있을 뿐, '생계곤란 및 무연고 유공자 장례지원'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다만 '서울특별시 고독사 예방 및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을 위한 조례'에서 유공자를 포함한 '무연고 사망자 장례서비스 지원'사업을 실시하고 있음.
- 2024년 2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제3항이 신설됨에 따라 시장은 무연고 시신 등을 처리하기 전에 무연고 사망자가 국가유공자인지 여부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사 예우를 받도록 조치하고 있음.

- 이에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를 일부 개정함으로써,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저소득층 생계곤란 및 무연고 사망자의 국가유공자 여부를 확인하고 해당자에게 국가보훈부 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른 장사 예우를 제공하는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가. 동 조례 제3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함.
- 나. 동 조례 제3조 제4항에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가 국가유공자'인지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해당할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과 함께 국가유공자에 대한 장사 예우를 받도록 함

3.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관계법령 국가보훈 기본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장사 등에 관한 법률
- 나. 예산조치 : 해당사항 없음 (비용추계 비대상사유서 별첨)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을 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시장은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지 여부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지방보훈지청을 포함한다)과 함께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③ (생략) <u><신 설></u>	제3조(시장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u>④ 시장은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인지 여부를 행정정보시스템을 통해 확인하고, 이에 해당할 경우 관할 지방보훈청(지방보훈지청을 포함한다)과 함께 국가보훈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장사 예우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u>
<u>④</u> (생략)	<u>⑤</u> (현행 제4항과 같음)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비대상 사유서

1. 판단 근거

- 서울특별시 공영장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같은 조례 제3조(시장의 책무)제4항¹⁾에 무연고 및 저소득층 사망자의 국가유공자 여부 확인 및 장사 예우책무 강조규정을 변경·신설한 것으로 별도의 비용을 수반하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에서 제외함

2.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재정분석담당관

담 당 관 주 병 준

추계세제팀장 김 중 헌

추 계 분 석 관 손 제 승

☎ 02-2180-7953

e-mail : smclt22@seoul.go.kr

※ 이 서류는 의안 발의 참고 자료입니다.

1) 시장의 책무규정은 통상 **선언적 조항**(Ex. “~노력하여야 한다” 등)으로 조문 단독으로 비용을 발생시키지 않아 비용추계 대상 제외하나 “~추진하여야 한다”, “~지원하여야 한다” 등으로 규정되어 있을 경우 예외적으로 비용추계 대상으로 판단하고 있음